



제317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 4 차 복 지 환 경 위 원 회

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

[박윤옥 의원 대표발의]

검 토 보 고 서

2026. 2. 9.

복 지 환 경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조 공 선

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7일 박윤옥 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은둔형 외톨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, 이들을 발굴하여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 및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를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(안 제3조, 안 제4조)
- 기본계획의 수립 등,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(안 제5조, 안 제6조)
-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(안 제7조, 안 제8조)
- 지원사업,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규정(안 제9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
- 다. 관련부서 : 복지정책과
- 라. 입법예고 : 2026. 1. 27. ~ 2. 1.(5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은둔형 외톨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, 이들을 발굴하여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 및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
- 22년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,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의 4.5%인 약 13만 명이 은둔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, 전국으로 확장하면 약 61만 명에 달합니다.

< 고립·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>

구분	비율	추산인원
전체(고립·은둔)	4.5%	126,829명~129,852명
· 고립	3.3%	93,820명~96,056명
· 은둔	1.2%	33,009명~33,796명

< 외출하지 않는 은둔을 한 기간 >



※ 출처: 「서울시 고립·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(’ 22.12.)」 - ’ 23.1.19. 발표

- 이혼과 실직, 사업실패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고립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, 자살, 사회적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은둔

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- 이와 더불어 개인적·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'은둔형 외톨이'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.

□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□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
 - 조례안 제3조(시장의 책무)
 - 조례안 제7조(지원사업)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『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』 제3조제2항제1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작성) ① 『지방자치법』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8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자료를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3.7.27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3.7.27.>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유사 사업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추계는 어려우나, 최근 3개년 관련 사업의 증감액을 고려했을 때,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

※ 참고 (관련 지원사업 현황)

세부사업명	부 기 명	예산현황 [단위 천원]				사 업 내 용
		연평균 증감액	2026년	2025년	2024년	
	합 계	3,500	97,920	37,920	20,000	
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(국비50%도30%시20%)	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사업	3,500	90,000	30,000	20,000	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
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(시100%)	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	0	7,920	7,920	-	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안부확인을 위한 사업비

4. 작성자 : 북지국 복지정책과장 노영광